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68
----------	----

제안년월일 : 2003. 11. 10.

제안자 : 김정순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 계룡시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가. 감사, 조사,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대상사무, 활동기간, 조사한계, 조사방법등을 정함(안 제2조 ~제9조)
- 나. 증인선서, 선서방법, 증인보호, 증인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하제10조~제13조)
- 다. 감사 또는 조사장소(안 제14조), 공개의 원칙(안 제15조), 제척과 회피(안 제16조) 주의의무(안 제17조)등을 규정하였으며
- 라. 감사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징계, 고발,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등을 규정함.(안 제19조~제22조)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①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본청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하부행정기관

3. 계룡시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 법인중 계룡시가 4분의 1이상의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의 사무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 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은 해당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등으로 시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절차는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증인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1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하며 선서는 별표2 또는 별표3의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한다.

제11조 (선서방식)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②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증인등 실비지급) ①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②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여비정액표 등급 제3호)을 준용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계룡시 의회의원

2. 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3. 계룡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4. 허위로 증언·진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증인·참고인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5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해 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보고서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계룡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1조 (고발)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의장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제22조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개회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설명문안)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2]

피감사 공무원 선서문

선 서

본인은 계룡시의회(○○○○위원회) ○○년도 행정사무 감사(또는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또는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별표3]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

선 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년도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계룡시의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증 인 : (인)